

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자체안전점검계획의 기준(제49조제1항관련)

항 목	내 용
1. 정기점검 실시	<p>가.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제조시설은 다음과 같다.</p> <p>(1) 화약류 제조소의 제조시설</p> <p>(가) 위험공실</p> <p>(나) 화약류 적체장</p> <p>(다) 위험공실에 부속한 동력실 및 경비실</p> <p>(라) 니트로셀룰로오스의 초화공실 등</p> <p>(마) 봉산고형건조공실</p> <p>(바) 폐산분리 및 폐산치장 등</p> <p>나. 정기점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할 것</p> <p>(1)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제조 또는 저장에 있어 성수기가 있는 제조시설 또는 저장소는 성수기 직전에 1회 이상 실시할 것</p> <p>(2) 제조시설 또는 저장소는 대청소를 한 후 그 구조·위치·설비가 영 제8조 및 제9조·제28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점검할 것</p> <p>(3) 파괴장치·경보장치 및 소화설비 등이 기술상의 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점검할 것</p> <p>(4) 흠독은 영 제42조 및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점검할 것</p>
2. 정기점검계획	<p>가. 제조업자 또는 저장소의 소유자는 점검규정을 제정하여 제조업자는 경찰청장, 저장소의 소유자는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할 것. 이 규정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.</p> <p>나. 제조업자 및 저장소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조시설 및 저장소의 설치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보고서에는 제조시설 또는 저장소의 소재지 및 명칭, 점검실시기간, 점검결과와 시정 및 보수사항을 기재하고, 점검을 지휘·감독한 안전책임자가 기명날인한다.</p>